

한의예·학과 전공별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·학과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지식·정보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전임교원 및 산업체, 관련기관 등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산업체, 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의 임직원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하고,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학협력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 및 학과(전공)별 반영 . 개편
2. 현장맞춤형(미스매치 해결형)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
3. 재학생의 취 . 창업역량 강화 방안
4. 기타 산학연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.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그 결과를 LINC3.0사업단에 제출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한의대학교 제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)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